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위임 확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21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위임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발의연월일 : 2024. 7. 1.
3. 회부연월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위임 확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제7호 및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u><신설></u> ③·④ (생략)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u>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u>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옥외광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 업무 관계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건축, 도시, 디자인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본문·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1조제2항 중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을 “제9조제1항 전단·후단”으로 한다.

정부는 2023년 10월 27일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¹⁾’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2)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의 사전 차단, 3) 자치법규의 정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운영, 4)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신속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음.²⁾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법령(법률 81개, 하위법령 65개) 정비를

1) 202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1.1.1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공동 부의장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 법제처 보도자료, 2023.11.10.

※ 붙임 [주요 정비 사례] 참조

추진 중이며,

개정안은 동일한 취지에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임.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	기금의 재원을 법률에 규정 (제6조의2②)	<u>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u> 도 기금 재원으로 사용 가능 예) 그 밖의 기금운영 수익, 지자체 통합재 정안정화기금, 잡수익 등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령 ³⁾ >으로 규정> 위원(장) 요건, 위원(장) 임기·제척사유, 소위원회·간사 설치, 개 의·의결 요건 등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전국적·통일적 사항 : 위원(장) 요건 <조례로 위임> 그 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현행법 제6조의2는 시·도지사와 시장등에게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원 및 용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 및 용도>

재원(제6조의2②)	용도(제6조의2③)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시·도지사와 시장등이 설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⁴⁾을 기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현행법 제7조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4) 예)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 그 밖의 기금운영 수익, 잡수익 등

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장) 임기·요건·제척사유, 소위원회·간사 설치, 개의·의결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전국적·통일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인 위원(장)의 요건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부칙에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을 개정하고 있음.

부 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1조제2항⁵⁾ 중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을 “제9조제1항 전단·후단”으로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별) ① (생략)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본문·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6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참고**주요 정비 추진 사례 (법제처 보도자료, 2023.11.10.)****□ 조례위임 범위 확대**

연번	제명	세부 내용	소관부처
1	건축물관리법	지자체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전부 위임함.	국토교통부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자체장이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산림청
3	온천법 시행령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함.	행정안전부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함.	행정안전부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함.	행정안전부

□ 지방자율성 제고 : 중앙부처 승인·협의·보고 최소화

연번	제명	세부 내용	소관부처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등을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계획 및 결과를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해양수산부